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

2025년 6월 10일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9일, 김용술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5년 6월 1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, 국민권의 위원회의 「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」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, 회의록 공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정례회·임시회 회의록의 홈페이지 공개 시기 반영(안 제44조 제1항)
- 임시회의록의 홈페이지 공개 시기 신설(안 제44조 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-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, 국민권익위원회의 「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」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, 회의록 공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

2) 주요 내용

- 가) 정례회·임시회 회의록의 홈페이지 공개 시기 반영(안 제44조 제1항)
- 나) 임시회의록의 홈페이지 공개 시기 신설(안 제44조 제2항)

3) 검토 의견

- 「지방자치법」 제84조 제4항에 따르면“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는“지방의회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”라고 그 시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
- 따라서 본 개정안은 회의내용 및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 상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됨
- 또한,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이면서 규정이 미비했던 부분은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고,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권고안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제고와 의사 공개 활성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,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